

‘종교계와 함께하는 시정협력 및 종교문화예술 향유확대를 위한
2019년 종교단체 지원사업 공모’
지 원 신 청 서 접 수

종교계와 함께하는 시정협력 및 종교문화예술 향유확대를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19조에 따라 ‘2019년 종교단체 지원사업’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12월 26일

서울특별시장

추진근거

- 문화기본법 제13조(문화진흥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)
-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39조(민간 문화예술축제의 지원)
- 지방재정법 제32조의2(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)
-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장(총칙)~제3장(지방보조금의 교부 등)

공모대상 : 종교단체(개인지원 불가)

- 종교단체(불교, 개신교, 천주교, 원불교, 천도교, 유교, 민족종교 등)
 - 각 종단·교단 본부(총무원, 산하기관 등), 일선 종교단체(교회, 사찰, 성당 등) 등
- 종교관련 유관단체 : 종교관련 연구기관, 언론기관, 사회단체 등

< 종교단체 인정기준 : 아래 사항 중 1가지 이상에 해당될 경우 인정 >

- ① 문화체육관광부나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종교분야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
- ②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목적에 종교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대표나 임원 중 스님, 목사, 신부 등 성직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
- ③ 영리법인인 경우 설립목적에 종교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소유지분의 30% 이상을 종교단체에서 보유하고 있어야 함

□ 공모분야

① 시정협력(종교계 사회공헌) 분야

- 공모취지 : 시정분야별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종교계 시민 참여행사를 지원하여 시정 성과와 종교계 사회공헌 활동의 촉진 도모
- 시정분야 : 여성, 경제, 일자리, 복지, 교통, 문화관광, 환경, 안전, 건강, 다문화, 교육, 남북교류, 도시재생, 공원, 체육 등 서울시 각 부서단위의 정책목표
- 공모지원 가능행사(예시) : 시정 각 분야를 주제로 하는 문화행사

시정분야(예시)	행사주제(예시)
건강	· 정신건강, 가족건강, 음식문화, 먹거리, 보건 등
환경	· 환경보호, 기후, 공해, 공기, 에너지, 자원 등
복지	· 어르신, 장애인, 보훈, 사회복지 등
여성	· 성평등, 보육, 가족, 돌봄, 외국인, 다문화 등
남북교류	· 사회문화교류, 통일기반 등

①-1 3.1 독립선언 100주년 연계행사 분야(2019년 특별공모)

- 공모취지 : 2019년 3.1 독립선언 100주년을 맞아 관련 종교단체의 기념사업을 지원하여 종교계 독립선언의 숭고한 의미를 되새기고 이를 후대에 계승 ※ 단년도 지원
- 공모대상 종교 : 개신교, 천도교, 불교
※ 3.1 독립선언 민족대표 33인 구성 : 개신교 16, 천도교 15, 불교 2
- 공모지원 가능행사(예시) : 문화제, 컨퍼런스 등 3.1 독립선언의 의미를 재조명할 수 있는 다양한 보훈 문화행사

② 종교문화예술 분야

- 공모취지 : 종교계의 대중화된 문화예술 중 계승·발전이 필요한 행사를 지원하여 시민 문화향유기회 확대 도모
- 문화예술 범위 : 문학, 미술(응용미술을 포함한다), 음악, 무용, 연극, 영화, 연예(演藝), 국악, 사진, 건축, 어문(語文), 출판 및 만화를 말함(문화예술진흥법상 정의)
- 공모지원 가능행사(예시) : 음악회, 국악제, 무용제, 미술전,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

※ 공모지원 불가행사

- 대시민 참여가 불가능한 종교인 내부행사(순수 종교행사)
- 문화 또는 문화예술적 요소가 없는 순수 봉사활동(행사)
- 서울시 타부서(산하기관 포함)에서 지원하고 있는 행사
-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행사 등

지원규모 : 640백만원, 15건 내외(예정)

○ **행사당 최대 지원금액 150백만원, 최소 지원금액 15백만원**

- 단,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건별 최대 지원액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음

○ **2019년 최초 개최되는 행사는 최대 30백만원 지원**

- 단, 3.1 독립선언 100주년 연계행사는 사업성격상 최초 개최될 수밖에 없으며, 단년도 지원인 점을 감안하여 최대 30백만원 지원규정을 적용하지 않음

지원항목 : 행사수행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

○ **보조금 교부 이전에 사용한 사업비는 지원불가(정산시 불인정)**

○ **행사와 직접 관련 없는 행사 주관단체 운영경비(상근직원 인건비, 사무실 임대료, 사무용 집기 구입, 공과금 등) 등은 지원불가**

지원조건

○ **책임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자부담 확보 의무화(시비보조금의 20% 이상)**

- 단, 보조금 20백만원 이하 지원행사는 자부담 10%(시비보조금 대비) 이상

- 자부담의 범위는 협찬금은 포함하되 국비, 구비, 행사수입금은 불포함

○ **공모분야 ①에 선정된 행사의 경우, 전반적인 사항을 서울시와 상호 협의하여야 함**

○ **선정된 모든 행사에서 서울시 후원명칭을 사용하여야 함**

선정방법 : 서울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 및 금액 결정

○ **선정기준**

- 모든 지원대상 행사는 종교신자 외 일반시민 참여가 가능하도록 시간, 공간 및 장소, 행사내용 등이 적합하게 구성되었는지 심의

- 공모분야(시정협력분야(종교계 사회공헌), 종교문화예술분야)별 공모취지에 적합한 행사내용으로 구성되었는지 심의

- 시비보조금 지원을 통해 지원대상 행사의 발전방향 및 그에 따른 실현방안 등이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 심의

- 기타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

○ 심사항목(안)

기 준		심 사 항 목
정량 평가 (20점)	① 행사개최 실적 (10점)	- 기존 개최행사 : 최근 3년간 행사 개최결과 - 신규 개최행사 : 최근 3년간 유사행사 개최결과
	② 예산구성(10점)	- 시비보조금 신청금액 대비 자부담 비율(2019년 개최예정 행사) ※ 보조금 교부전까지 자부담 확보 증빙자료 제출(미제출시 선정취소) ※ 최초 제안한 자부담 비율 미만으로 변경불가
정성 평가 (80점)	① 행사비전 및 발전가능성(35점)	- 사업계획의 독창성과 구체성 · 각 공모분야(시정협력, 3.1독립선언 100주년, 종교문화예술)의 공모취지에 맞게 행사내용이 독창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구체성이 있어야 함 - 시비보조금 지원을 전제한 행사발전 방향 및 그에 따른 실현 방안
	② 종교인 등 신자 외 일반 시민참여도(25점)	- 다수 시민들의 문화향유 가능성(무료 행사 비율 등) - 시간, 공간적 접근성(야외행사 비율 등) - 시민들의 직접 참여 정도(시민체험 프로그램 현황 등)
	③ 행사운영(10점)	- 운영인력과 운영조직 확보 등 사업계획 이행 가능성 - 사업에 대한 예산운용계획의 적절성 및 현실성 - 행사안전을 위한 노력 - 자체평가 등을 통한 환류 및 개선 노력
	④ 홍보(10점)	- 홍보 및 마케팅 기획 및 실행 능력 - 홍보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

※ 심의기준 및 심사항목 등은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변동될 수 있음

□ 신청서 접수

- 공고기간 : '18. 12. 26.(수) ~ '19. 1. 15.(화) / 20일간
- 접수기간 : '19. 1. 9.(수) 09:00 ~ 1. 15.(화) 18:00 / 7일간
- 접수방법 : 인터넷 신청·접수

- 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(<https://ssd.wooribank.com/seoul>)

※ 「진행사업 공고」에서 사업신청 클릭 → 지원사업 등록

○ 제출서류

-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
- 신청단체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

※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이 없는 단체는 소속종단의 추천서 및 대표자 임명확인서 각 1부

- 단체정관 1부
- 사전재원(자부담, 국비, 협찬금 등) 확보 증빙자료(통장사본, 공문서 등) 각 1부
- 최근 3년간(2016~2018) 개최이력 실적증명 자료 각 1부

※ 2019년 최초로 개최예정인 행사는 유사행사 실적증명 자료

<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>

- 사업계획서는 작성양식에(A4용지 종 방향) 작성(한글 워드로 작성)
 - 계획서 본문 내용은 10페이지 이내로 작성(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 기재)
- 사업계획서 양식은 변경 불가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첨으로 첨부
-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
-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수치로 표시
- 사업계획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, 그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공모사업 선정 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
- 포괄적인 사업비 편성 지양
 -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예비비,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이지 않은 사업비 편성 불가
 - 안전관리요원 운영 등 안전관리예산 배정 필수
 - 회계검사를 위한 예산 배정 필수(지원금액과 관계없이 필수 이행)

- 심의위원회 개최 : '19.1월중, 접수완료 후 별도통보 예정
- 선정결과 발표 : '19.1월말, 선정된 단체에게 개별통보 예정

유의사항

-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반환하지 않음
- 사업수행실적은 최근 3년간(2016~2018년)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
- 사업계획서에 대한 확인·검증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
-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후 사업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 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선정단체가 부담함
-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서류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취소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
- 총사업비를 실제 소요 예산보다 과다하게 산정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심사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 - 공모사업 선정 이후 제출한 예산집행계획 대비 최종사업비가 축소될 경우, 축소 비율 만큼 보조금 감액 지원
 - 민간보조사업자(종교단체)는 회계검사 필수 이행 및 정산 시 검사서 제출 의무
 - 공고문의 내용에 대한 해석은 서울시 의견에 따름
 -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- 문의처 : 서울시 문화정책과 이승헌 주무관(02-2133-2522),
유은혜 주무관(02-2133-2532)